

“축산자원개발부 합평 이전, 실질적 보상 없는 불가”

군민 등 500여명 합평군청 앞 집회
육복합 벨리사업 등 6대 사업 촉구
“요구 미수용엔 투쟁 수위 높일 것”



23일 오전 9시30분께 합평군청 앞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대응 합평범군민대책위원회와 군민 등 500여명이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6대 정책 사업 약속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주성학 기자

합평 군민·사회단체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 자원개발부의 합평 이전과 관련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정책 사업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대응 합평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오전 합평군청 앞 도로에서 사회단체와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평군 정책사업 유지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오는 22년까지 충남 천안에 있는 성환 종축장을 합평군 신광면 일원으로 옮기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전하게 되면 해당 지역 내 187명의 실랑민이 발생하고, 이전 부지 반경 3km내 6천611만여㎡(2천만평)가 ‘가축 방역 구역’으로 묶이면서 농가들의 축산업 제한 등 막대한 재산권 침해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항의서한 전달

과 세종시 철야 농성 등을 통해 이주민 보상과 재산권 대책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대책위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자 최근 합평군수와 농식품부 장관이 ‘피해보상 정책사업 유치 TF팀’ 구성 및 공모사업 추진에 합의했고, 철야 농성을 잠정 보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합의된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것을 정부로부터 보장 받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 모인 군민들은 농식품부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오민수 대책위 상임대표는 “국방부 사업인 광주 공군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는 농식품부가 나

서서 스마트팜 등 2천억원 규모의 정책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반면 본연의 사업인 합평 이전에는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축산자원개발부가 있던 천안 성환 부지는 416만5천여㎡에 1조6천억원을 투입, 첨단산

업단지를 조성해 14조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5만8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지만, 합평은 가축 방역 규제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6천억원 규모 AI 첨단 축산업 육복합 벨리사업 승인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 우선 지정 ▲이주민 생업 보장용 스마트팜 30만평 조성 ▲가축 방역 피해 구제용 스마트축사 15만평 조성 ▲영농형 태양광 5GW 지정 ▲이주민의 농지·주택·축사 및 지적재산권 등 6대 핵심 사업의 정책 사업 지정을 촉구했다. 현장을 찾은 이상의 합평군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군민들의 요구 사항을 합평의 미래 산업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합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대책위는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의 약속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오 상임대표는 “토지와 지장물 등 보상 절차에 협조하며 국가 사업을 뒷받침해 왔다”며 “정당한 정책 사업 보장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청와대 앞 상경 집회 등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며, 주민 동의 없는 사실상 인가 접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성학·합평=기영규 기자

비위 제보 명퇴 거부당한 직원 ‘퇴직금 수령’ 길 열려

지역농협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법원 “피고 농협 권한 남용 인정”

직급 지급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A씨가 청구한 약 3억9천만원 중 3억4천만원 상당을 인정했다. A씨는 해당 농협에서 25년 이상 근무했으며, 2023년 10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농협 측은 A씨에 대한 ‘제규정 위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고 지점장에서 팀장으로 전보시켰다.

조합장 비위 제보 후 신청한 명예퇴직을 거부당한 농협 직원이 당초 받았어야 할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한 지역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

이에 A씨는 이번 인사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조합장의 범죄 행위를 제보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조합장에 대한 제보를 위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불승인 결정은 무효로 판단된 인사발령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감사를 사유로 삼고 있다”며 “피고 A씨의 내지 과실로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사 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재영 기자

첫 방문 당일 백내장 수술 후 녹내장... “의사 손배 책임”

법원 “설명 의무 부실... 선택권 침해”

단, A씨가 청구한 1억원 중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는 500만원만 산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B씨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안압이 높아지고 눈의 통증과 함께 두통에 시달렸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넘도록 후유증이 개선되지 않자 A씨는 다른 병원을 찾았는데, 이곳에선 그에게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부종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 녹내장

병원을 처음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당일 수술을 했으나 향후 부작용을 호소할 경우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일부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치료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황반부종 자체는 드물지 않게 동반되는 점과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내장은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닌 만큼 충분한 설명과 경과 관찰 등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A씨의 병원 첫 방문 당일 수술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설명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B씨가 백내장 수술에 있어 필요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면서 A씨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이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재영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